

# 제4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9.3.5.(서면심의)

## 안건명: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47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

### 【주요 심의내용】

- 과업의 내용에 “도심 간선도로 차로 축소에 대한 검토” 및 “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환승센터 신설방안 검토”를 추가할 것
- 도로 및 시설현황 조사에서 ‘도로 포장 현황(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,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)’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것
- 검토 노선 주변 시설물(지하철 관련 구조물 등)에 대해 위치, 구조물의 추가·개량·보완여부 및 변경계획 등을 조사하도록 할 것
- 도로·교통 현황조사에서 ‘서울특별시교통정보센터(TOPIS) 자료(교통량 및 속도조사 등) 조사’ 내용을 추가할 것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본 검토서는 2019.2.28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 :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교통	“적정함”	
종합의견	원안채택	

2019년 2월 25 일

심의위원 : 이수범  (서명)

\*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도로	<p>1. 제4절 일반사항에서 설계변경 조건 언급 필요            (1) 기간, 비용 정산 방법 등에 대한 명기 필요            예) ○ 기본 업무량 증가, 민원발생에 따른 과업수행 지연,                발주자 요구사항이 있을 때            ○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에 따라 산정</p> <p>2. 용역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명시 필요            (1) 제4절 일반사항 6. 계약상대자의 책임에서 안전관리의 의무 명시            예)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               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               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</p> <p>5. 성과품의 구성에서 활용성을 고려 외장하드 추가            (1) P25. 「제2절 성과품의 구성」에서 “외장하드(요약보고서, 최종                보고서, 설계도면, 기타 용역수행 검토자료 및 Data)            ※ 오탈자 수정            P.5 나. 과업수행계획서 (1) 학수보고서→착수보고서</p>	
종합의견	원안 채택	

2019년 2월 28일

심의위원 : 김 철 중 (서명)

본 검토서는 2019.2.28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토목구조	<p>(1) 1. 도로 및 시설현황 조사(p. 18) 다. 도로 및 시설현황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. <u>- 도로 포장 현황(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) 등</u></p> <p>(2) 4. 구조물 조사(p. 20) 가. 검토 노선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(지하철 관련 구조물 등)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, 개량, 보완여부, <u>초후 각종 변경계획 등과</u>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(3) 제4절 대안별 경제성 분석 및 최적대안 선정(p. 24) 나. 기존 도로(<u>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</u>)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차로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한다.</p>	
종합의견	<p><b>조건부채택</b>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9년 2월 27 일

심의위원 : 이승원



본 검토서는 2019.2.28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토질	<p>“1Page” &lt;내용수정&gt;</p> <p>제 2절 과업의 목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JC·IC ⇒ JCT·IC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 강북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이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</p> <p>⇒ 서울시 강북지역 시민의 이동 편리성 향상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.</p>	
종합의견	<p>“2page” &lt;내용 추가&gt;</p> <p>3. 내용적 범위</p> <p>라. 실행계획 마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심 간선도로 차로 축소를 통한 도로 기능 개선방안 검토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환승센터 신설방안 검토.</p> 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9년 2월 25 일

심의위원 : 강 병 윤 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 ○ 안건명 :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1.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에 ‘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(Time Sheets) 제출’을 추가 보완할 것(p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( 월)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10px;">성 명 :</td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10px;">책임기술자 :</td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인</td> 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월/일</th> <th>투입시간</th> <th>휴일(야간)</th> <th>근무시간</th> <th>수행업무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..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“계약상대자의 책임”에서 ‘설계오류’는 ‘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’로 수정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할 것(p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계오류 →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</li> <li>- 과업내용(간선도로 네트워크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)에 비추어 “설계 내용이 설계기준 또는 시공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~ ”을 아래와 같이 수정 ※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(토목편, p4) 참고 ⇒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,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~</li> <li>- “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” 추가</li> <li>- “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.” 추가</li> <li>- ‘안전관리의 의무’ 항목 추가</li> </ul> <p>3. ‘자문회의’ 관련 다음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할 것(p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,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○○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○○일 전까지</li> </ul>	성 명 :	인	책임기술자 :	인	월/일	투입시간	휴일(야간)	근무시간	수행업무	비고	1						..						30						
성 명 :	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책임기술자 :	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/일	투입시간	휴일(야간)	근무시간	수행업무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
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.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p>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제3절 도로·교통 현황조사에서 ‘서울특별시교통정보센터(TOPIS)’ 자료(교통량 및 속도조사 등)를 조사·분석토록 할 것(p18)</p> <p>5. 제4절 기타조사에 ‘기존 지반조사 자료 조사’를 추가하여 간선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도로 검토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(p19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(<a href="http://surveycp.seoul.go.kr">http://surveycp.seoul.go.kr</a>)</li> <li>-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(<a href="http://www.geoinfo.or.kr">http://www.geoinfo.or.kr</a>)</li> </ul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9년 3월 일

심의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